
2020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 추천 학업지원장학생 선발계획(안)

2020. 3.

학생처 학생과

I 추진배경

- 실제 가정형편이 곤란함에도 관련 규정 또는 지침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장학금 혜택에서 소외된 학생을 지원하고자 함

II 관련근거

- 「부산대학교 장학금 규정」 제18조(장학사정관)
- 「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 지침」 제23조(학업지원장학금)

III 선발기준(안)

1. 지원대상

- 등록금 지원이 필요한 정규학기 학생 중 **장학사정관 추천자**
 - ① 소득분위 9분위 이상 : 아래 가계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
 - 보호자의 실직·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
 - 직계존속이 장애인(1 ~ 3급)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
 - 직계 존·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중증질환·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의 긴급한 치료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
 - 기타 가계곤란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
(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지원 받지 못하여 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포함)
 - ② 소득분위 0~8분위 : 성적탈락(2.51 미만자) 등으로 등록금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(위 ①항의 유형에 속하는 자 등을 장학사정관이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)
 - ③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최대 지원 가능 횟수 초과자 :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최대 지원 가능 횟수를 초과하여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(위 ①항의 유형에 속하는 자 등을 장학사정관이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)

< 사전고지 >

2020학년도 장학생 선발부터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가 확정된 학생만 신청 가능하나 반드시 매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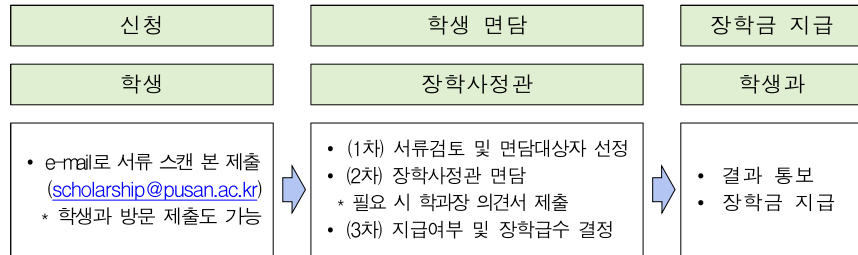
2. 선발기준

- (선발기준) 가계곤란 정도, 성적, 지원 횟수, 학생 태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
- (성적기준) 직전학기 평점평균 2.0 이상, 이수학점 12학점 이상
 - ※ 심사 학기가 졸업 학기일 경우 직전 학기 이수 학점 1학점 이상
- (지원금액) 가계곤란 정도(상·중·하)에 따라 차등 금액 지급(등록금에 한함)

결과	장학금액	비 고
상	A급(등록금 전액)	가계곤란 정도,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등급 결정
중	B급 ~ C2급(수업료2)	
하	D급(수업료1)	

IV 선발절차 및 추진일정

1. 선발절차



2.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

- (기본서류) 장학금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
 - ※ 선발 진행 과정에서 필요 시 학과장 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음
- (선택서류)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서류(중복가능)

가계곤란 해당 사유	증빙서류
보호자의 실직·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실직)고용보험수급자격증, 구직등록필증 • (파산)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(결정문) • (개인회생)변제수행 납입증명원, 결정문
직계존속이 장애우(1급~3급)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애인 증명서
직계존·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중증질환·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의 긴급한 치료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진단서, 의료비 영수증 (최근 1년간 소요된 당해 질병 치료비)
기타 추가적인 가계곤란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타 공공기관에 의해 경제적 곤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

※ 2020학년도부터는 해당 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미확정자는 신청 불가

3. 추진일정

- 장학사정관 추천장학금 신청 : 2020. 3. 25.(수) ~ 4. 14.(화)
- 신청서류 검토 및 면담 : 2020. 4. 16.(목) ~ 4. 27.(월)
- 장학생 결정 및 통보 : 2020. 4. 29.(수)

붙임 장학사정관 추천 장학금 신청서 1부. 끝.

학생과